

● 세계 각국의 도서관법

한국도서관법

[1963. 10. 28 법률 제1424호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기록·시청각자료·국가 및 지방행정자료·향토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하게 하여 그 조사·연구·학습·교양·레크리에이션 기타 사회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종류) ①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② 전항에서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교양과 조사·연구 및 레크리에이션등 그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학생 및 교원의 학습·교양·조사·연구 및 레크리에이션등 그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시설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그 소속원의 교양과 조사·연구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제) 특수도서관과 그 설립자에 대하여는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도서관 시설) ①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건물·도서관자료·열람시설 및 기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은 그 환경과 시설이 이용에 편리하고, 보건·위생 또는 관리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③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서직원의 배치) 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운영에 관한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등에 대한 공공도서관 설치의 권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사회 교육 및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에 노력하여야한다.

제8조(도서관의 사용료)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독청) ① 사립의 공공도서관은 제1차로 시·군 교육장(서울특별시·부산시교육 위원회를 포함한다), 제2차로 도교육위원회, 제3차로 문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학교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0조(정관명령) 감독청은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자에 대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②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관의 방법 이외로는 이를 감독할 수 없을 때

제11조(폐관신고)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한 때에는 그 사유와 도서관에 관한 조치상황을 밝혀 감독관청에 폐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도서관자료의 제공과 납본) ① 국가기관이 관보·도서 기타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3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보·도서 기타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3부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그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에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③ 출판사 또는 전2항 이외의 자가 도서 기타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간행물의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납본한 자가 그 간행물에 대한 실비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도서관협회) ① 도서관의 설립자는 도서관 상호간의 자료교환·운영관리에 대한 연구 또는 국제도서관 단체와의 협조 및 기타 사항에 관한 협조와 전체도서관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도서관협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서관협회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제2장 공공도서관

제1절 총 칙

제14조(설립자) 공공도서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도서관의 기능) 공공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통하여 공중에 봉사한다.

1.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상의에 응하는 일.
2. 독서회·연구회·감상회·전시회 기타 행사를 주최하거나 장려하는 일
3. 다른 공공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과 협조하여 도서관자료를 상호 교류하는 일.
4. 도서관업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5. 기타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제2절 국립중앙도서관

제16조(설치) ①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관을 둘 수 있다.

제17조(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5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에 관한 문헌의 수집 및 보존
2. 국내외 서지의 작성 및 그 소개
3. 도서관자료의 국제교류
4. 도서관학에 대한 조사·연구
5. 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원조

제3절 공립의 공공도서관

제18조(공립의 공공도서관의 설치) ①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부를 두어야 하며 지역적 사항에 따라 분관 또는 이 동문고를 둘 수 있다.

제19조(보조) 국고는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서관의 시설과 설비에 요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절 사립의 공공도서관

제20조(사립의 공공도서관의 설치) 사립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사립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보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의 공공

도서관으로서 각령이 정하는 사서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립자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한 때에는 그 보조를 받은 사립의 공공도서관의 설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조언 및 시정명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시설 또는 운영 기구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감독청은 사립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도서관과 동종의 시설) 누구든지 도서관과 동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학교도서관

제25조(설치) ①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도서실 또는 도서관을, 실업고등전문학교·초급대학·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에는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직원)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서 실업전문학교·초급대학·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에는 사서직원을 두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각각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27조(일반의 이용에의 제공) 학교도서관은 그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8조(벌금)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립의 공공도서관을 개설한 자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정관명령에 위반한 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간행물의 정가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립의 공공도서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1969. 11. 3 대통령령제4191호

개정 1977. 6. 2 대통령령제858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시설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의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25조 제2항의 학교 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따로 각급 학교의 시설기준령에 의한다.

제3조(사립의 공공도서관 설치등록)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공공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공도서관 설치 등록 신청서에 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의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시·군 교육장은 거쳐야 한다.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은 정사서와 준사서로 한다.

② 정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대학의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준사서로서 사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1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③ 준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초급대학 졸업자(실업고등전문학교 졸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재학중 또는 졸업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2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도서관학을 이수한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과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서관업무의 강습)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교양강습 실시의 요청이 있거나 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업무에 관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등의 배치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1. 국민학교에는 1인 이상의 사서교사나 1인 이상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1,200인 이하인 때에는 1인의 사서교사나 1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 할 교사를 두며, 그 학생수가 1,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사서교사나 2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3. 실업고등전문학교·초급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대학교의 대학을 제외한다)과 대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500인 이하인 때에는 2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학생수가 500인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800인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

② 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에는 그 도서관건물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하인 때에는 3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65평방미터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

제7조(도서 기타 간행물의 납본) ①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 기타 간행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을 납본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 납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납본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본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국립중앙도서관의 타 도서관에 대한 지도·원조)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원조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도서관자료의 기증 및 상호 대차
3. 순회문고의 운영
4. 인쇄카드의 배부
5. 귀중한 문헌의 마이크로 복제와 배부
6. 기타 도서관업무의 기술향상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6.2.대령858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공도서관시설기준

건 물 면 적						장 서		기준인구
면 적	열람실	아 동 열람실	정 기 간행물실	서 고	사 무 실	기본장서수	연 간 증가수	
165평방 미터	50석	20석	면적의 10 퍼 센 트		면적의 10 퍼 센 트	1,000권이상	200권	2만이상 4만미만
330 "	100 "	30 "	" 10 "	면적의 10	" 12 "	1,000 "	300 "	10 "
660 "	200 "	50 "	" 5 "	퍼 센 트	" 10 "	1,500 "	500 "	20 "
900 "	300 "	70 "	" 6.7 "	" 10 "	" 9.3 "	2,200 "	1,000 "	30 "
1,320 "	400 "	100 "	" 7.5 "	" 10 "	" 7.5 "	2,800 "	2,000 "	40 "
1,650 "	500 "	150 "	" 6 "	" 10 "	" 6 "	3,300 "	3,000 "	50 "
1,930 "	700 "	200 "	" 5 "	" 12.5 "	" 7.5 "	5,000 "	4,000 "	50만이상

비고 : 1. 이 표중의 기준인구수는 사립의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표중의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건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100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1街 100-177 (社)韓國圖書館協會

☎ (752) 4864 · 5613 對替計座 서울中央537530

한국십진분류법<제 3 판> (제 1 권 본표 · 제 2 권 상관색인)	25,000원	비도서자료<이론과 실제>	5,000원
한국목록규칙<제 3 판>	6,500원	고서분류목록법(상)	4,500원
도서관학개론	4,500원	한국도서관기준	3,500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4,500원	선정도서목록(II)	2,500원
한국목록규칙해설	4,500원	선정도서목록(IV)	3,000원
도서관전산화입문	6,000원	한국도서관통계(1984)	4,000원

도서관법 시행규칙

1969. 7. 19 문교부령 제236호 한글화

개정1975. 11. 6 문교부령 제369호

제1조(자격증의 교부신청)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75. 11. 6 문교령369>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3. 영 제4조 제2항 각호의 1 또는 동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이수증명서 또는 사서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로 300원을 수입인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자격증의 서식) 제1조의 사서자격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이 훼손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훼손한 자격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로 2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증의 기재사항의 정정신청) ①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격증을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로 1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강습기관의 지정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학 강습기관(이하 “강습기관”이라 한다)으로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학과가 설치된 대학
2. 국립중앙도서관
3.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도서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강습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강습기관의 교육과정은 별표에 의하되 각 과목별 시간배당은 강습기관에서 정한다.

제7조(이수증등) ① 강습기관이 소정의 과정을 종료한 때에는 그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강습에 있어서와 과정이수의 단위를 학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 1시간씩의 1학기 간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당해 이수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1. 6문교령3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과정표

필수	도서관의 조직 및 관리, 도서관사, 목록법, 분류법, 도서선택, 참고업무 및 일반참고자료
선택	도서관학개론, 서지학개론, 도서관과 사회, 도서및 인쇄사, 저작권법, 고서목록법, 비도서자료, 디큐멘테이션, 인문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한국서지, 동양서지, 시청각자료, 근세한국주제별사료, 사서실습

비고

1. 영 제4조 제2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택과목중 3과목을 과한다.
2. 영 제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수 과목을 면제하고 선택과목중 5과목을 과한다.